

언론인 듯 언론 아닌 언론 같은 팟캐스트 Podcast



2011년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이 기성 가수들을 긴장하게 했다면, <나는 꿈수다>라는 팟캐스트는 기존 언론들을 긴장하게 했다. 정치, 시사적인 이슈를 다루는 <나꿈수>는 2011년 4월 27일 첫 방송을 시작한 뒤, 아이튠즈 팟캐스트 오디오 부문에서 인기 순위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팟캐스트 열풍은 현재도 이어져 정치, 경제, 스포츠, 음악 등 다채로운 분야의 팟캐스트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팟캐스트란 애플이 시작한 다운로드 형식의 개인방송으로, 팟캐스트 운영자가 자신이 제작한 오디오 또는 비디오 파일을 아이튠즈나 팟빵 등에 올려놓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다운로드하여 취취 또는 시청할 수 있다. 이러한 팟캐스트는 특정 분야에 대한 사실관계나 이에 기초한 출연자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간혹 방송 내용 중에는 잘못된 사실적 주장이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팟캐스트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방송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피해자가 민법 제764조나 제750조의 이기 팟캐스트 운영자나 출연자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한 편리하고 빠른 피해회복이 가능한가의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팟캐스트가 언론중재법 상의

조정대상 매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상 조정대상 매체는 방송, 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다. 이 중 팟캐스트 운영자가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카테고리는 인터넷신문이다. 그렇다면 팟캐스트는 인터넷신문인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이다. 이 규정만 놓고 보면 팟캐스트가 일응 인터넷신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다.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팟캐스트가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별 팟캐스트 운영자가 아닌, 팟캐스트 사이트 자체를 운영하는 아이튠즈나 팟빵을 상대로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언론 기사를 그대로 제공하는 팟캐스트라면 아이튠즈나 팟빵 등은 포털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하지만 인터넷뉴스서

비스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즘은 기존의 언론사가 직접 팟캐스트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기존의 언론사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하고 매체를 팟캐스트로 지정하여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러한 경우까지 조정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같은 방송을 자사 홈페이지에 올리면 조정신청 대상이 되고, 팟캐스트에 올리면 조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통상 언론매체는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가지 기능을 그 핵심적인 요소로 하는데, 많은 팟캐스트들이 이러한 3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팟캐스트를 가리켜 '대안 언론'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새로운 미디어로서 가지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팟캐스트는 매체 접근의 용이성,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그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정법상 팟캐스트를 언론조정대상으로 삼는 데 한계가 있다. 현실과 규정 사이에 괴리가 있는 셈이다. 명시적 규정으로 팟캐스트를 언론중재법 상의 조정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한 면밀한 제도적, 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